

[별지 제5호서식] (규칙 제8조제1항 관련) <개정 2024. 7. 18.>

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

투표소명	등 재 번 호	성 명	오기사항 등	비 고

- 주: 1. "오기사항 등"칸에는 오기·선거권이 없는 자·사망자·이중등재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. (예: 성명 중 "○○"은 "××"의 오기임, ○년 ○월 ○일 ○○법 위반으로 ○○형을 받음, ○년 ○월 ○일 사망함 등)
2.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"투표소명"을 "구·시·군위원회명"으로 적습니다.